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15-555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민영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1.09.02.(목)	25.03.12.(수)	25.03.17.(월)	25.03.20.(목)	25.03.21.(금)	25.03.27.(목)

1 공통 유의사항

-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분양상담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서 계약해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입주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 되어 현장 방문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세대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3.12(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046**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2(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5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3.17.(월)	25.03.20.(목)	25.03.21.(금)	25.03.27.(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p>※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p> <p>※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p> <p>-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p> <p>■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1.09.2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기산일 기준 전매제한기간이 초과되어 해당이 없습니다.</p> <p>■ 분양권 전매 및 거주무기기간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p> <p>·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p> <p>· 거주무기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 개시하여야 함.)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p>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중 계약해지주택 1세대[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5년 5월(또는 잔금 납부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 ² , 세대)
--	----------------------------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5910046	01	069.9200	69	69.9200	29.5948	99.5148	74.3022	173.8170	17.8991	1
	합 계									1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없음)

약식표기	동·호	분양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69	103-402	366,545,000	407,755,000	774,300,000	154,860,000	619,44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분양가입니다.(2021.09.02.)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잔금약정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 열쇠 수령일로부터 계약자 부담)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 시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69	3,909,000	781,800	3,127,200
----	-----------	---------	-----------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내역 및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	품목	내용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 시	입주 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69	103-402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침실2,침실3(총4개소) 삼성	5,830,000	8,952,000	1,790,400	7,161,600
		현관중문	현관중문(3슬라이딩 도어)	1,050,000			
		주방벽체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1,047,000			
		쿡탑	인덕션3구	460,000			
		기능성오븐	기능성오븐(LG MZ385EBT)	400,000			
		기타가전	디지털도어락(지문인식)	165,000			

■ 무상옵션(선택 및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약식표기	동-호	품목	선택사양	공급금액	선택사양
69	103-402	침실1, 드레스룸	기본형	-	-
		거실+침실2	분리형(기본)	-	-

- ※ 본 아파트는 계약해지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20.(목) ~ 2025.03.29(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3.2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대리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청약신청자)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본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위임장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증명서 (계약자)	계약자(본인)	
	○		인감도장 (계약자)	계약자(본인)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대리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 2025.03.20.(목) ·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3.21.(금) (10:00~16:00)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 일시 : 2025.03.27.(목) (10:00~16:00)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	--	--	--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2829-1111-896837	(주)무궁화신탁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2829-1112-526637	(주)무궁화신탁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잔금	하나은행	2019-2434-596937	현대건설(주)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주체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4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402홍길동으로 기재)
-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 하여야 합니다.
- ※ 공급금액(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각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 및 계약체결 장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현금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위임장		○	-	-현장 비치(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12.(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당첨자 서류접수시 제출과 중복되는 서류의 경우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계약 현황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2021.09.02.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5항에 따른 계약해지 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상호명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정원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 P&S타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에이동 218호 (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34511-0428513	110111-0007909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분양문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6번길 6, 109호(이의동,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 031-215-5551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이 시행수탁자 겸 분양사업자인 (주)무궁화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임을 인지하며, (주)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무궁화신탁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정원산업개발(주)와 현대건설(주)가 부담합니다.
- 신탁계약 상 위탁사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및 위탁자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시공사(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사업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사업정산 내지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의 지위가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로 자동 변경되며 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의 지위 일체가 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바, 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원리금 등 분양목적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합니다.